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828935	
등록번호	110111-8289351	
상 호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8.30 변경 2022.08.31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와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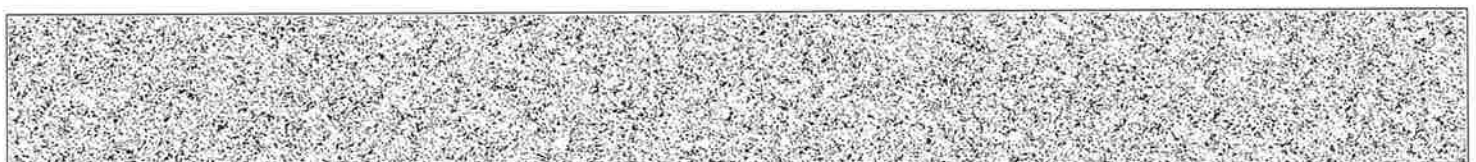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주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
보통주식 60,000 주	금 300,000,000 원	.
발행주식의 총수 1,406,667 주		2022.11.11 변경
보통주식 860,001 주		2022.11.11 등기
제1종종류주식 346,667 주		
제2종종류주식 199,999 주	금 7,033,335,000 원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취득·개발·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관리(시설운동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영희 750103-*****
--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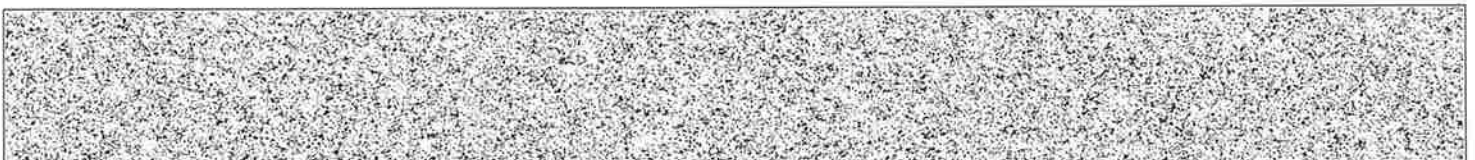


등기번호	828935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329동 1901호(원문동, 래미안슈르)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	
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	
감사 김윤식 740709-*****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 ①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오백만]([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
-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1.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5%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2.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5%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3.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다만,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18, 7-19 토지(이하 통틀어 “추가 부지”)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추가 건물”,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추가 부동산”)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이하 “추가이익금”)을 수령하는 경우:
- 1)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의 15.0%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2)본 목 1)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명확히 하면,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이하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 이 경우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이라 함은 (A)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에서 (B)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 {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A-B)을 의미하며,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가.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 (1)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



등기번호	828935
------	--------

하여 배당한다.

(2)위 (1)의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중 각 15.0%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7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나.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③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④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4.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5. 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6. 제3항 제4호 가목 (2)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미배당금액을 제3항 제4호 가목 (2)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

7.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⑤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2 년 11 월 11 일 설정 2022 년 11 월 11 일 등기

제2종종류주식

①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오백만]([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5%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5%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3.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



등기번호	828935
------	--------

례하여 배당한다. 다만,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18, 7-19 토지(이하 통틀어 “추가 부지”)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추가 건물”,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추가 부동산”)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이하 “추가이익금”)을 수령하는 경우:

1)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의 15.0%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2)본 목 1)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명확히 하면,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이하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 이 경우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이라 함은 (A)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에서 (B)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 {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A-B)을 의미하며,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

(2)위 (1)의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중 각 15.0%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7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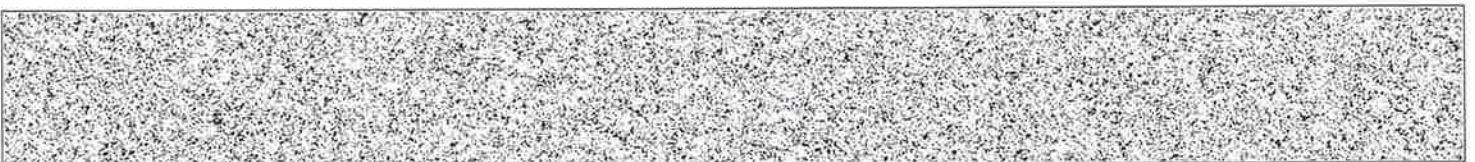
나.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③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④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2.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등기번호	828935
------	--------

3.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4.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5. 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제3항 제4호 가목 (1)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6. 제3항 제4호 가목 (2)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미배당금액을 제3항 제4호 가목 (2)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
7.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 ⑤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2 년 11 월 11 일 설정 2022 년 11 월 11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양도 포함)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2 년 05 월 0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2 년 05 월 04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등기번호	828935
------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2년 1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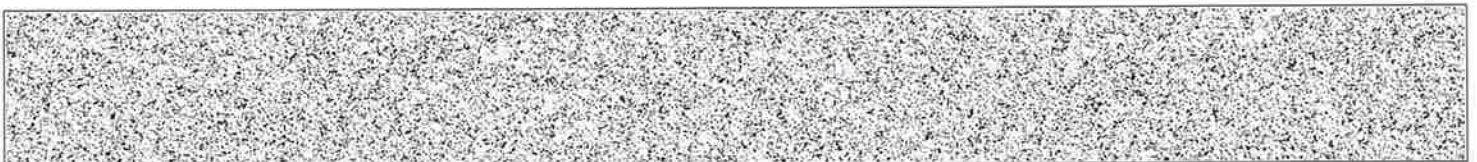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7020402650107012111022200523190872085131P1U0E101 1

발급확인번호 9352-AAWM-WGGJ

발행일:2022/11/17